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520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
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417호, 2022.7.15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㎡)

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
5층 이하	40㎡ 이하	1,921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012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1,948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875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1,92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03
	125㎡ 초과	1,876

6~10층 이하	40m ² 이하	2,056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54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85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07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56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37
	125m ² 초과	2,008
11~15층 이하	40m ² 이하	1,929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021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,956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883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29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11
	125m ² 초과	1,884
16~25층 이하	40m ² 이하	1,951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044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,978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04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50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32
	125m ² 초과	1,905
26~30층 이하	40m ² 이하	1,982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076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09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34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81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63
	125m ² 초과	1,935
31~35층 이하	40m ² 이하	2,013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09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41
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65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1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94
	125㎡ 초과	1,966
36~40층 이하	40㎡ 이하	2,044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141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73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95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4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25
	125㎡ 초과	1,996
41~45층 이하	40㎡ 이하	2,072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170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01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22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7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52
	125㎡ 초과	2,023
46~49층 이하	40㎡ 이하	2,136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238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66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85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36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16
	125㎡ 초과	2,086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
(지하층면적기준)

916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1596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
를 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
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
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